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사하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간 주도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제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추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나. 축제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3조,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문화예술전문가, 의장추천 구의원, 문화예술관계 공무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구 의원과 공무원은 보직기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간사(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위원회 업무 총괄
- 구청장은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 원할 경우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축제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둘

라 재원 및 회계, 수당 등(안 제10조)

- 국·시비 및 구비보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운용

마. 준용(안 제12조)

- 조례규정 사항 외 「사하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준용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 안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참여로 우리구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자율참여 유도 및 민·관이 함께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하구 축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 적법성 부문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 위임을 명시하고 있음.

□ 재정적 측면에서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재정적 부담이 없으나 문화예술, 축제 행사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의 자연환경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비,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짐.

□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2008. 9. 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 용 택

《 관 계 법 령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생략)

5.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다(생략)

라.지방문화, 예술의 진흥

마.(생략)

6.(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생략)